

Samil PwC Assurance Monthly Newsletter

September 2021



삼일회계법인

Contents

GAAP

04 국제회계기준 해석위원회의 주요 안건결정

GAAS

09 2020 회계연도 상장법인 감사보고서 분석 및 시사점 (금융감독원)

12 감사인 지정제도 관련 온라인 설명회 (금융감독원)

14 新 DART홈페이지 본격 가동 및 공시Data 추가 개방 (금융감독원)

TAX

16 최신 세무뉴스

17 최신 세무예규판례

Governance

20 기업의 위기 대응: 이사회역의 역할

01

GAAP
회계



국제회계기준 해석위원회의 주요 안건결정

국제회계기준 해석위원회(IFRS Interpretation Committee)의 2021년 상반기의 안건결정 사항 중 주요한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내용은 K-IFRS 재무제표 작성 시에도 적용되어야 합니다.

금융감독원의 국제회계기준(IFRS) 해석위원회 안건결정 동향('21.1분기) 및 ('21.2분기) 자료에서 선별 하였습니다.

1. 재고자산 판매에 필요한 비용(Costs Necessary to Sell Inventories) – IAS 2 ‘재고자산’

[질의]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 결정 시, 매각에 필요한 원가를 추정함에 있어 판매에 필요한 모든 원가를 포함하는지 혹은 판매증분원가만 포함하는지 여부

[최종결정]

판매에 필요한 원가는 판매증분원가에 국한되지 않으며, 재고자산의 성격을 포함한 특정 사실과 상황을 고려하여 판매에 필요한 원가를 추정

- 순실현가능가치는 예상 판매가격에서 예상되는 추가 완성원가와 판매비용을 차감하도록 되어 있으나(IAS 2 문단 6) 동 기준서는 판매를 위해 필요한 특정비용을 구체적으로 식별하지 않으므로, 판매증분원가만을 판매비용으로 보기 어려움
- 판매에 필요한 추정원가를 판매증분원가로만 제한할 경우 IAS 2 문단 28에 규정한 판매로 실현될 예상 금액을 초과하는 재고자산의 기록을 방지하지 못할 수 있음

2. 퇴직급여의 기간 배분(Attributing Benefit to Periods of Service) – IAS 19 ‘종업원급여’

[질의]

특정 확정급여제도*에서 퇴직급여를 배분하는 근무기간에 대해 질의

* 종업원이 정년까지 근무한 경우 일시불급여(퇴직급여) 수령 자격이 생기며, 액수는 정년 이전의 연속 근무기간에 따라 달라지고 상한선 존재

※ 질의의 사실관계 설명을 위해 다음 조건(①~④)의 확정급여제도를 가정

- ① 종업원이 정년(62세)이 되었을 때 기업에 고용되어 있을 경우, 퇴직급여 수령 자격을 얻음
- ② 퇴직급여 금액은 근속연수 1년당 퇴직 전 1달치 임금
- ③ 퇴직급여는 근속연수 16년을 상한으로 함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최대 퇴직급여는 최종급여 16개월 분임)
- ④ 퇴직급여는 퇴직 직전 연속 근속연수에 대하여 계산

[최종결정]

기업은 종업원의 퇴직급여를 46세부터 62세까지 매년 배분하며, 46세 이후에 고용이 된 종업원의 경우 최초로 근무용역을 제공한 날부터 62세까지 매년 배분함

- 확정급여제도에서는 종업원이 근무용역을 제공함에 따라 급여의 가득여부와 관계없이 기업의 의제 의무가 발생(IAS 19 문단 72). 기업은 퇴직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생기는 기간¹⁾에 퇴직급여를 배분(IAS 19 문단 71)
- (46세 이전 입사자) 퇴직급여의 근속연수 상한이 16년이므로 46세부터 62세²⁾까지 종업원이 연속적으로 제공한 근무용역에 대해 기업의 퇴직급여 지급의무 발생(IAS 19 문단 73). 46세 이전에 종업원이 제공하는 근무용역은 퇴직급여 수령 자격이 생기기 전(62세)까지 제공해야 하는 근무의 양을 줄이지 못하며, 퇴직급여의 시기나 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IAS 19 문단 72~73)
- (46세 이후 입사자) 46세 이후 입사한 종업원이 제공하는 근무용역은 모두 퇴직급여를 발생시키므로, 종업원이 최초로 근무용역을 제공한 날로부터 기업의 지급의무 발생

1) 특정 확정급여제도 하에서 정한 급여가 처음 생기는 날부터 추가 근무용역이 제도에 따른 중요한 금액의 급여를 창출하지 않는 날까지의 기간(IAS 19 문단 70)

2) 62세 이후 더 이상 중요한 금액의 급여가 생기지 않음

3. 클라우드컴퓨팅 환경의 Configuring 또는 Customising 비용 (Configuration or Customisation Costs in a Cloud Computing Arrangement) – IAS 38 ‘무형자산’

[상황] 고객은 공급자와 SaaS(Software as a Service)¹⁾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공급자의 소프트웨어에 대해 Configuring²⁾ 또는 Customising³⁾ (이하, ‘추가용역’)하기 위한 금액을 선급함

- 1) **서비스로서의 소프트웨어:** 고객이 계약기간 동안 공급자의 소프트웨어에 대한 접근권을 가지는 계약으로, 고객은 소프트웨어 자산을 소유하지 않음
- 2) **Configuration(구성화):** 소프트웨어의 기존 코드를 특정 방식으로 작동하기 위해 소프트웨어 내 다양한 ‘플래그(flags)’ 또는 ‘스위치(switch)’를 설정하거나 특정 값이나 매개변수를 정의하는 것. Configuration은 추가적인 소프트웨어 코드를 쓰거나 변경하지 않고 특정 방식으로 기능하도록 소프트웨어의 기존 코드를 설정(setting up)하는 것을 포함
- 3) **Customisation(맞춤화):** 기존의 소프트웨어 코드를 수정하거나 추가 코드를 쓰는 것을 포함. Customisation은 일반적으로 소프트웨어 내에서 기능을 변경하거나 추가로 생성

[질의1]

고객이 접근권을 가진 소프트웨어에 대해 Configuring 하거나 Customising 하는데 드는 원가를 무형자산으로 인식하는지 여부

[최종결정]

무형자산의 정의*와 인식기준을 모두 충족해야만 무형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고객이 추가용역한 자산으로부터 미래경제적효익을 확보하고 제3자(공급자 포함)의 접근을 제한할 힘(통제력)은 없음

* 물리적 실체는 없지만 식별할 수 있는 비화폐성자산으로 다음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함

무형자산 정의요건	①식별가능성	②미래경제적효익 존재	③자원에 대한 통제
충족 여부	상황별로 판단	○	x

- 추가용역 원가는 무형자산의 정의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무형자산으로 인식할 수 없음
- 다만, 고객이 추가 코드 작성* 등을 통해 해당자산을 통제할 수 있다면, 추가용역의 식별가능성을 판단하고 무형자산 인식기준(IAS 38 문단 21)을 만족하는지 검토

* 고객에 의해서만 접근 가능한 추가 코드를 통해 제3자의 접근을 제한하는 경우

[질의 2]

무형자산으로 인식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원가의 회계처리 방법

[최종결정]

무형자산으로 인식할 수 없다면 고객이 추가용역을 제공받을 때* 해당 원가를 비용으로 인식(IAS 38 문단 69)

* 기업이 다른 용역을 제공하기 위해 공급자의 용역을 사용하는 때가 아니라, 계약에 따라 공급자가 그 용역을 수행하는 때(IAS 38 문단 69A)

- 다만, IAS 38은 용역의 식별과 수행시기에 대한 구체적 판단근거를 제공하고 있지 않아, 해석위원회는 해당 논제와 유사한 논제를 다루는 IFRS 15 규정을 준용하여 용역 수행시기를 결정할 수 있음을 안내

① (추가용역이 구별되는 경우*) 고객은 공급자가 소프트웨어를 Configuring 하거나 Customising할 때 발생한 원가를 비용으로 인식

* (참고) 해석위원회는 추가용역의 공급자가 제3자인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기존 SaaS 계약과 구별된다는 견해

② (추가용역이 구별되지 않는 경우) SaaS 계약으로부터 추가용역이 별도로 식별되지 않으므로, 고객은 공급자가 소프트웨어에 대한 접근권을 부여하는 계약 기간에 걸쳐 추가용역 원가를 비용으로 인식

- 한편, 고객이 추가용역을 제공받기 전에 공급자에게 대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선금금을 자산으로 인식(IAS 38 문단 70)

금융감독원 관련 공지사항 참조

▶ [국제회계기준\(IFRS\) 해석위원회 안건결정 동향\('21. 1분기\)](#)

▶ [국제회계기준\(IFRS\) 해석위원회 안건결정 동향\('21. 2분기\)](#)

02

GAAS

회계 관련 감독기관 동향



2020 회계연도 상장법인 감사보고서 분석 및 시사점 (금융감독원)

1. 배경

- 금융감독원은 상장법인 2,364사의 '20회계연도 감사보고서를 분석하였으며, 코스닥상장법인 1,447사(61.2%), 12월결산(98.3%), 연결재무제표(77.0%) 작성기업이 다수를 차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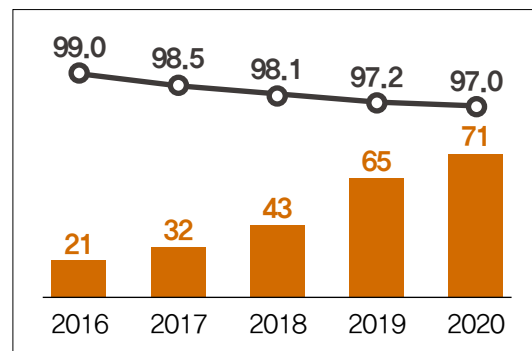
2. 감사의견 분석내용

□ 감사의견 현황

- 분석대상 상장법인의 97.0%인 2,293사가 적정의견이며 전기(97.2%) 대비 소폭 하락함
- 비적정의견을 받은 상장법인은 71사(한정의견 6사, 의견거절 65사)로 전기 65사 대비 6사가 증가하였으며, 비적정의견 사유는 감사범위제한(63사) 및 계속기업불확실성(32사) 순임
- 최근 5년간 적정의견 비율 및 비적정의견 기업 수 추이

(단위: 사,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적정 (비율)	2,060 (99.0)	2,123 (98.5)	2,187 (98.1)	2,236 (97.2)	2,293 (97.0)
비적정	21	32	43	65	71
합계	2,081	2,155	2,230	2,301	2,364



□ 시장별 분포

- 적정의견의 시장별 비율은 코스닥 시장은 당기 96.5%로 전기(96.4%)와 유사한 반면, 유가증권(당기 98.7%, 전기 99.1%) 및 코넥스 시장(당기 92.1%, 전기 93.9%)은 전기대비 하락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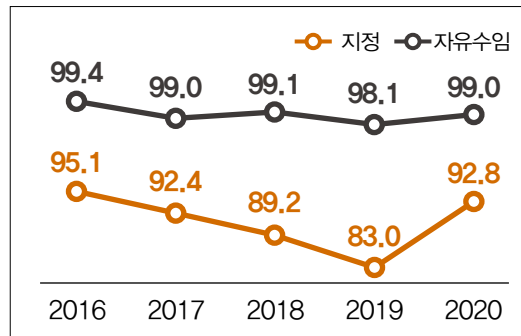
□ 감사계약 유형별 분포

- 적정의견 비율은 감사인 지정기업(92.8%)이 자유수입 기업(99.0%)보다 6.2%p 낮은 수준임
- 지정기업의 경우, 재무상황이 좋지 않은 등 감사위험이 높은 기업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적정의견 비율이 자유수입기업보다 현저히 낮았으나, '20년에는 재무상황이 우량하고 감사위험이 높지 않은 주기적지정이 본격 시행되어 그 차이가 감소함

• 최근 5년간 감사인 선임방법별 적정의견 비율

(단위: 사,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지정	기업	183	171	232	141	767
	적정의견 비율	95.1	92.4	89.2	83.0	92.8
자유수입	기업	1,898	1,984	1,998	2,160	1,597
	적정의견 비율	99.4	99.0	99.1	98.1	99.0



□ 자산규모별 분포

- 적정의견 비율은 자산 1천억원 미만 상장법인이 93.9%로 가장 낮으며, 규모가 작을수록 재무구조가 취약하거나 내부통제 수준이 낮은 경우가 많아 비적정의견이 많은 것으로 추정

3. 강조사항 등 유의사항 기재 관련

□ 강조사항* 기재

- 감사보고서에 강조사항이 기재된 상장법인은 630사로 전기(250사) 대비 큰 폭으로 증가
- 증가한 강조사항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영업환경의 불확실성과 주기적 지정 시행 등에 따른 감사인 변경 증가로 인한 전기 재무제표 수정 순임

* 감사의견에 영향은 없지만, 재무제표를 이해하는 데 중요하고 이용자의 주의를 환기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아 감사인이 감사보고서에 기재한 사항

□ 계속기업 불확실성 기재

- 적정의견 기업(2,293사) 중 계속기업 불확실성이 기재된 기업은 105사(4.6%)로 전기(84사, 3.8%) 대비 증가하였으며, 전기 적정의견 & 계속기업 불확실성 기재 기업의 당기('20년) 이후 상장폐지 또는 비적정의견 비율(17.9%)은 미기재기업(1.7%)보다 11배 높음

4. 감사인 분포

□ 4대 회계법인(Big 4) 회계법인 집중도

- Big 4는 상장법인 2,364사 중 734사를 감사하였으며 그 비중은 당기 31.0%로 전기(38.2%) 대비 감소하였으며, 중견 회계법인(Top 10 중 하위 6사) 상장법인 감사비중은 당기 36.0%로 전기(24.7%) 대비 대폭 증가

5. 시사점

□ 상장법인의 적정의견 비율 하락세 둔화

- 적정의견 비율은 新외감법 개정 후 계속 감소하였으나, 주기적지정 등 감사인 변경에도 불구하고 최근 하락세는 둔화
- 재무제표 신뢰성 및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해 시행된 신규제도*가 급격한 시장변화를 수반하지 않고 안착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

* 주기적 지정제,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외감법 과징금 도입, 표준감사시간제 등

□ 감사보고서 강조사항 및 계속기업 불확실성 기재에 유의 필요

- 외부감사인이 이용자의 주의환기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감사보고서에 강조사항을 기재한 회사가 '20년에 대폭 증가하였으며 감사보고서 이용자들은 동 강조사항에 유의 필요
- 계속기업 불확실성이 기재된 기업은 적정의견을 받았더라도 재무상황 및 영업환경 등이 개선되지 않으면, 향후 상장폐지 또는 비적정의견을 받을 가능성이 높음

□ 중·소형 상장법인일수록 중견 회계법인 선호

- Big 4의 감사대상 상장법인 수는 감소 추세이며, 중견 회계법인의 경우 전기보다 크게 증가
- 등록 회계법인의 감사품질 유지를 위해 등록*요건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감사인 지정 시 감사품질요소 반영을 확대할 예정

* 등록요건을 구비하여 사전에 감독당국에 등록한 회계법인(40개)만 상장법인 감사를 수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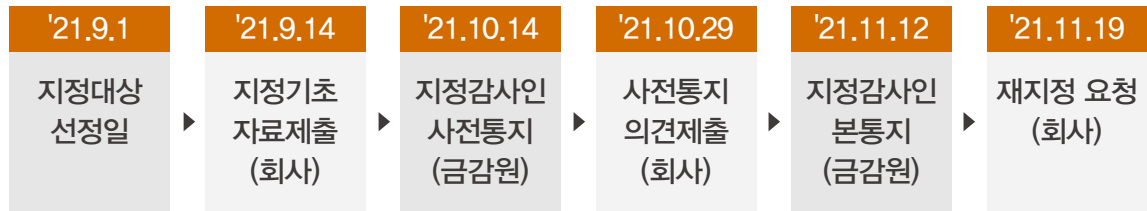
감사인 지정제도 관련 온라인 설명회 (금융감독원)

1. 개요

- 금융감독원은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코넥스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및 한국공인회계사회와 함께 8월 31일 '감사인 지정제도 관련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하고 지정제도의 주요 내용 및 지정기초 자료*의 작성 유의사항에 대한 관련 동영상 게시

* 지정기초자료를 미제출하거나 거짓 기재한 경우, 감사인 지정대상이 될 수 있음(외감법 시행령 §17⑥제6호)

- [참고] '22사업연도 주기적 지정 일정 (12월 결산법인)



2. 주요 설명내용

- 지정제도의 주요 내용
감사인 주기적 지정 및 직권지정의 대상, 지정사유, 기간 및 방식 등 지정제도의 주요 내용 소개
- 자료작성시의 유의사항
주기적 지정 대상회사와 감사인 지정을 희망하는 회계법인이 「감사인 지정 기초자료신고서」를 작성 및 제출할 때의 유의사항으로 금년부터는 상장회사뿐만 아니라 소유·경영 미분리 대형비상장주식 회사에 대해서도 주기적 지정 통지가 본격적으로 실시되므로 충실한 작성 필요
- 최근 2년간 감사인 지정 현황

(단위: 사, %)

지정사유	지정연도		2019		2020		증가	
	전체	상장법인	전체	상장법인	전체	상장법인	전체	상장법인
주기적지정	220	220	462*	434	242	214		
직권지정	1,004	587	1,059	626	55	39		
합계	1,224	807	1,521	1,060	297	253		

* 상장회사 434와 소유·경영 미분리 대형비상장주식회사 28사

□ 주요 문의사항

'21.8월 중 유관기관 및 상장회사 감사인이 질의한 감사인 지정제도 관련 문의사항에 대한 검토 결과 설명(약 32건의 Q&A 기재)

- 감사인 지정을 받은 후 재무구조가 개선되는 등 지정사유가 해소되거나 상장폐지 등 회사의 상황이 크게 변동되는 경우 지정이 해제되는지?

↳ 감사인 지정이 무효이거나 취소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감사인 지정은 해제되지 않으며 잔여 지정기간 동안 지정됨

- 직전년도 말 현재 소유·경영미분리 대형비상장회사가 이후 소유·경영 미분리 요건을 해소한 경우에도 여전히 주기적 지정 대상에 포함되는지?

↳ 지정대상선정일('21.9.1.)까지 소유·경영미분리 요건이 해소된 경우 지정기초자료 신고서를 통해 해소 사실을 입증하면 주기적 지정 대상에서 제외

- 회사의 공동 또는 각자 대표이사 중 1인만 소유·경영 미분리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도 소유·경영 미분리에 해당됨

3. 관련 자료 게시

- 금융감독원 회계포탈(acct.fss.or.kr)¹⁾ 및 유관기관²⁾ 홈페이지에 설명회 동영상 게시

1) 외부감사인 지정 ... 감사인지정제도 온라인 설명회

2) 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코넥스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공인회계사회

- 기업·회계법인 담당자가 궁금한 사항을 금융감독원 「[회계포탈-외부감사 Q&A](#)」 및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참여마당(고객의 소리-국민제안-질문사항) 등을 통해 질의시 신속하게 답변할 예정

新 DART 홈페이지 본격 가동 및 공시Data 추가 개방 (금융감독원)

1. 배경

- 금융감독원은 공시정보의 접근성, 편리성 강화를 위하여 ① Dart 홈페이지 및 ② 모바일 앱을 전면 개편하고 ③ Open Dart 활용 58종 공시정보를 추가 개방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신규 홈페이지는 'http://dart.fss.or.kr'로 접속되며, 구버전은 'http://olddart.fss.or.kr'로 접속됨

2. 주요 변경사항

- 신규 모바일Dart 앱(Google Play, 애플 App Store 설치가능)
 - PC용 홈페이지와 동일한 기능 및 경험을 제공하며, 관심기업 공시알림(관심기업이 공시서류를 제출하면 스마트폰 알림수신) 기능 강화
- 공시 검색기능의 다양화
 - **공시통합검색:** 키워드 검색시 회사명, 보고서명, 본문내용, 목차에 대한 검색결과가 하나의 화면에 표시
 - **정기공시 항목별 검색:** '정기공시', '사업보고서' 등 공시용어가 생소한 이용자도 상장회사의 사업개요 및 재무제표 등 중요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사업(분·반기)보고서 내 주요항목 검색 기능 제공
 - **맞춤형 검색:** 이용자가 자주 검색하는 조건 및 회사를 저장('최근검색어', 'My공시' 기능)
- 공시정보 분석 및 개방 홈페이지 Open Dart(http://opendart.fss.or.kr)을 통하여 주요사항 보고서 및 증권신고서 등 공시정보 58종을 추가 개방
 - 추가 개방 대상 공시정보 요약

구분	공시정보명	대상기간
사업보고서 (16종)	회사채 이상환 잔액, 감사용역 체결현황 및 감사의견 등	'15.1.1. 이후 접수분
주요사항보고서 (36종)	유상증자 결정, 자기주식 취득·처분 결정, 회사 합병·분할 결정, 부도 발생 등	
증권신고서 (6종)	지분증권 요약정보, 채무증권 요약정보, 합병 요약정보, 분할 요약정보 등	

03

TAX



* 출처: Korean Tax Update_Samil Commentary, 2021. 09

최신 세무뉴스

2022년 국세수입 예산안

기획재정부는 8.31 '22년 국세수입을 금년 예산(314.3조원) 대비 24.3조원이 증가한 338.6조원으로 발표하였고, 이는 기업실적, 민간소비, 투자, 수출·입 등 경제전반에 걸친 회복세가 반영되어 법인세(73.8조원), 부가가치세(76.1조원), 종합소득세(20.8조원) 등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함

행정안전부, 2021년 지방세법 관계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는 8.11 2021년 지방세법 관계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9월말까지 정기국회 제출 예정)한 바, 개정안은 감염병 대응을 위한 의료기관의 취득세·재산세를 감면 연장 및 확대,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적격합병·분할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 연장, 실질가치 반영 강화를 위한 취득세 과표 개선, 경정청구 시 지방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을 납부일의 다음날로 변경하여 국세와 일치시키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중소벤처기업부, 스톡옵션 세제지원 확대 등 벤처 보완대책 확정

중소벤처기업부는 8. 26. 「글로벌 4대 벤처강국 도약을 위한 벤처보완대책」을 확정·발표한 바, 구체적인 추진전략으로 벤처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①주식매수선택권 제도개편, ②벤처특별법 일몰 폐지&전면개정, ③기술보증 최고한도 200억원까지 상향, ④글로벌 벤처펀드 1조원 조성, ⑤기후대응 보증 신설 검토 및 ESG 벤처투자 등을 제시하였으며, 벤처투자 시장 확대를 위해 ⑥모태펀드 민간출자자 인센티브 확대 및 벤처펀드에 현물출자 허용, ⑦실리콘밸리식 벤처펀드 지배구조 도입, ⑧창업초기펀드 1조원 조성, ⑨창업기획자 부가가치세 면제 등을 포함하였음. 또한 회수시장 활성화를 위해 ⑩기술혁신 인수합병(M&A) 보증 신설 및 인수합병 벤처펀드 확대 추진, ⑪인수합병 시 세제혜택 확대 추진, ⑫중간회수펀드 신규조성 실시 등 12개의 핵심과제를 내용으로 담고 있음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에 가상자산검사와 신설

정부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20.3월)·시행(21.3월)에 따라 건전한 가상자산 거래 질서 확립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조직과 인력을 확충 계획임. 이를 위하여 가상자산사업자 관리·감독 및 제도개선, 자금세탁방지 등의 법정사무를 전담하는 '가상자산검사와' 신설 및 가상자산 분야의 특정금융거래정보 심사·분석 강화를 위한 실무인력이 증원되며, 아울러, 자금세탁방지 대상과 유형이 다양해짐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장을 보좌하는 '제도운영기획관'을 설치하고 지방세 분야 특정금융거래정보 분석을 위한 인력이 증원됨

최신 세무예규판례

특수관계자 업무무관 가지급금 등에 대한 익금의제 규정(구 법령 §11 9호의 2 가목)이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무효인지 여부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 제1항은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에 따른 수익의 범위와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 하위 규정인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9. 2. 12. 개정 전) 제11조 제9호의 2 가목은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업무무관가지급금을 순자산증가가 없음에도 익금으로 규정(이하 “쟁점 시행령 규정”이라 함)하고 있는 바, 순자산의 증가 없이 익금으로 의제하는 쟁점 시행령 규정이 모법(법법 §15 ①, ③)에서 정한 위임범위를 벗어나 무효인지 여부가 이번 사건의 쟁점임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구 법인세법 제15조 제3항이 위임한 사항에는 같은 조 제1항이 정한 익금뿐만 아니라 소득처분을 위한 조세정책상 이유 등으로 익금으로 보는 것도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쟁점 시행령 규정에 따라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업무무관가지급금 등은 구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이 정한 익금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소득처분을 위한 조세정책상 이유로 익금으로 보는 것으로서 구 법인세법 제15조 제3항의 위임 범위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였음 (대법2020두39655, 2021. 7. 29.)

이번 대법원 판례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의 2 가목이 모법인 구 법인세법 제15조 제3항의 위임 취지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지 않음을 확인한 최초의 판결이라는 점에 의미가 있는 것으로 사료됨

같은 날에 과점주주 지위가 먼저 성립된 후 부동산 취득이 이루어진 경우, 해당 부동산에 대한 간주취득세 과세 여부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에서는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이 때, 과점주주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를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을 말함(지기법 §46 2호, 지기령 §24 ②)

이번 유권해석의 쟁점은 같은 날에 과점주주의 지위가 먼저 성립된 후 주식발행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 가액이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임

이에 대하여 과거 행정안전부는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시기와 부동산 취득시기가 동일한 경우 해당 부동산 가액은 간주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해석한 바 있는데(지방세운영과-3055, 2012. 9. 27. 등), 이번 유권해석에서는 같은 날에 과점주주의 지위가 먼저 성립한 이후 주식발행법인의 부동산 취득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해당 부동산에 대한 간주취득세의 납세의무는 없다고 회신하였음(부동산세제과-2064, 2021. 7. 29.)

이번 유권해석은 단순히 일자만이 아닌 시각까지 고려하여 같은 날에 과점주주의 지위가 성립된 후에 주식발행법인의 부동산 취득이 있는 경우에는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납세의무가 없음을 명확히 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04

Governance

기업지배구조



기업의 위기 대응: 이사회 역할

* 본 내용은 오는 11월 삼일회계법인 감사위원회센터에서 발간 예정인 「감사위원회와 지배구조」 Vol.16의 '다음 위기에 대비한 이사회 역할'을 요약한 것입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COVID-19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기업은 거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일부 기업은 이러한 위기를 다른 기업보다 쉽게 극복할 수 있었던 것처럼 보이는데, 이유는 견고하고 유연하며 잘 준비된 위기 대응 계획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사회는 이러한 위기 대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렇다면 이사회는 회사의 위기 대비를 위해 어떤 사항을 점검해야 할까?

I. 위기 발생 전: 회사의 대응 계획은 얼마나 효과적인가?

□ 종합적인 위기 대응 계획이 있는지 확인

최고의 위기 대응 계획은 살아있는 문서를 통해서 가능하다. 즉 관련 문서가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되고 개선되어야 한다. 그리고 회사의 위기 대응 계획이 업데이트되고 사용할 준비가 되어 있도록 경영진을 감독하는 일은 이사회 몫이다. 계획에는 지정된 위기 책임자와 적절한 위기 대응팀 구성원에 대한 개요를 포함하고, 그 역할과 책임을 명확하게 정의해야 한다. 이에 더하여, 필요한 외부전문가 및 커뮤니케이션 전략과 계획을 포함해야 한다.

□ 이사회 적시 보고

위기가 발생하면 이사회는 적시에 보고 받아야 한다. 위기에 따라 이사회에 거의 즉각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도 있고, 다음 이사회 회의까지 기다리는 것이 적절한 경우도 있다.

[경영진이 이사회에 보고해야 하는 이슈 예시]

- 회사와 관련된 사건으로 인해 심각한 부상자가 생긴 경우
- 회사 소유 자산의 심각한 손상이 발생한 경우
- 사건으로 인해 유의적인 재무상 영향이 예상되는 경우
- 중요한 시스템이 특정 기간 동안 중단 상태인 경우
- 회사와 관련된 사건이 상당히 부정적인 소셜 미디어의 관심을 끌고 있는 경우

□ **테스트에 대한 피드백 받기**

기업에서 발생하는 위기가 점점 증가하고 있으므로, 위기 대응 계획이 재검토되지 않은 채 방치되어서는 안 된다. 이사회는 주기적으로 위기 대비를 안건에 포함함으로써 위기를 염두에 둘 수 있을 것이다. 이사회는 경영진으로부터 현재 위기 대응 계획에 대한 업데이트 뿐만 아니라 계획이 어떻게 계속 테스트되고 있는지, 추가 교육 및 후속 조치가 무엇인지에 대한 피드백을 받을 필요성이 있다.

[이사회 의 위기 대응 계획]

경영진의 위기 대응 계획 외에도 이사회는 자체 계획을 세워야 한다. 이러한 계획에 포함될 수 있는 요소는 다음과 같다.

□ **위기의 성격에 따라 선호하는 지배구조**

이사회는 특별 위원회를 설립할 것인가, 아니면 기존 위원회를 활용할 것인가? 누가 특별 위원회에서 일할 것인가?

□ **이사회 커뮤니케이션 전략**

위기 대응팀을 위한 이사회 연락 담당자가 있는가? 이사회 구성원은 어떻게 서로 소통할 것인가? 이사회 구성원 중 누군가는 즉시 회의에 참여할 수 있는가?

□ **임시 승계 계획**

필요한 경우에 회사, 이사회 또는 위원회를 임시로 이끌 수 있는 이사가 있는가?

II. 위기 상황 중: 이사회가 경영진의 성공적인 대응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가?

□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점검할 것**

사건에 대응할 때 내·외부적으로 올바른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사회는 회사가 무엇을 말해야 하고, 누가 말해야 하며, 언제 말해야 하는지에 대한 경영진의 전략을 이해하고 논의해야 한다. 위기 상황에 대한 빈번한 커뮤니케이션과 업데이트도 필수적이다.

□ **모든 이해관계자를 다룰 것**

압박감 속에서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 기업은 한 두개의 이해관계자 그룹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사회는 의사소통 전략이 모든 이해관계자를 포함하며 다양한 필요와 이익을 고려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이 때 내부 의사소통은 외부 의사소통만큼 중요하다.

□ **다른 위험 요소를 미리 고려할 것**

위기 대응팀은 현재의 위기에 집중해야 하지만, 이사회는 장기적인 관점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특히나 위기가 장기화될 경우 이사회는 사업의 다른 영역에서 후속적인 영향을 파악할 전담 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지 고려해야 한다.

□ 위기의 파급 효과

위기는 기업의 위험 프로필을 빠르게 변화시킬 수 있다. 그리고 위기 상황은 기업이 예상하지 못한 다른 위험을 유발할 수 있다. 기업의 위험 관리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위험 상호 연결 분석을 통해 관련 위험을 파악할 수 있다.

□ 회사의 나머지 부분을 기억할 것

기업은 위기에 압도당하기 쉽다. 회사의 정상적인 운영을 유지하기 위해 이사회는 일상적인 개입과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할 수도 있다. 위기 상황 가운데 회사의 정상적인 운영에 계속해서 초점을 두는 것은 필수적이며 이사회는 이를 모니터링해야 한다.

III. 위기 후: 개선점 파악

□ 근본 원인 논의 및 대응 계획의 개선

이사회는 회사가 방금 겪은 위기의 근본 원인을 이해해야 한다. 위기가 끝난 후에는 회사가 얼마나 잘 대응했는지에 대한 비판적인 평가가 중요하다. 이때 이사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수 있다.

- 적절한 위기 대응팀
- 실용적인 계획
- 명확한 책임
- 효과적이고 시기적절한 의사소통
- 이해관계자
- 피드백에 대한 대응
- 유용한 기술 및 데이터



Contacts

GAAP

이 수 미, Partner
+82 2 3781 9548
sumi.lee@pwc.com

GAAS

성 현 주, Partner
+82 2 3781 9252
hyun-joo.sung@pwc.com

TAX

최 혜 원, Partner
+82 2 709 0990
hyewon.choi@pwc.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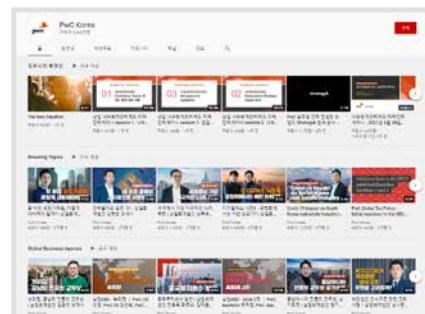
Governance

하 미 혜, Director
+82 2 709 8599
mihye.ha@pwc.com



삼일회계법인 공식 YouTube 채널 바로가기 Click

삼일 전문가들의 Insight와 최신 업계 동향, 그리고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삼일의 다양한 활동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www.samil.com

S/N: 2109A-NL-005

© 2021 Samil PricewaterhouseCoopers. All rights reserved. "PricewaterhouseCoopers" refers to Samil PricewaterhouseCoopers or, as the context requires, the PricewaterhouseCoopers global network or other member firms of the network, each of which is a separate and independent legal entity.